

『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(2009. 2. 12) 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(안 제2조제4항)
-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(안 제3조)
 - 20세 ⇒ 19세로 하향
-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(조례로 정함)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주민등록번호 ⇒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주소 ⇒ 주소, 거소, 체류지

4. 참고법령

- 주민투표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. 2. 12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에 차질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

○ 주요내용은

-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
-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며
-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투표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